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8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석기
김재섭 · 안철수 · 강선영
권영진 · 강명구 · 김예지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품질보증의 검사를 통과한 군수품의 방위사업계약 상대방은 해당 군수품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통합인증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품질보증) ① (생 략)	제28조(품질보증)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 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 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 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 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 을 지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 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 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 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 을 검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제4항에 따른 품질보증의 검사를 통과한 군수품의 방위 사업계약상대자는 해당 군수품 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u>

<u><신 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u>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u>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
--	---